

“텃밭 가꾸는 도시 행복 키우는 시민”

희망서울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질의회신(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행위) 알림

1. 중랑구보건소 의약과-4618(2013.03.20)호,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-983
(2013.4.24)호와 관련입니다.

2.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회신내용을 아래와 같
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질의내용

○ 의사의 지시하에 방사선사가 별도의 초음파실에서 유방 초음파
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(의사는 다른 환자 진료 중임)

□ 회신 내용

○ “의료기사”라 함은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1조에 따
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
서

- 의료기사 제도의 취지는 원칙적으로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
의료행위 중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
적은 특정 부분에 관하여 면허를 부여하고, 면허자로 하여금 그 특정 분야의
의료행위를 의사의 지도하에서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(대법
원 2002.8.23. 선고 2002도2014 참조)

? 또한,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로
'전리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
의료영상진단기 · 초음파진단기의 취급, 방사선기기 및 부속기자재의 선택 및
관리업무'를 규정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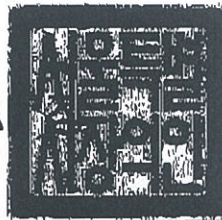
? 의학적 검사 및 촬영에 대한 진단이나 판독은 의학적 전문지식이
있는 의사가 해야 함. 따라서 진단과 판독이 병행되면서 이루어지는 초음파 검
사 및 촬영은 방사선사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,

진단이나 판독을 단순히 보조하기 위한 행위로서 초음파 검사 및 촬

영은 의사의 입회하에 방사선사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.

? 따라서, 의사의 지시에 의해 방사선사 단독으로 초음파촬영이 이루어졌을 경우 이는 의료법 제27조에 위반됨. 끝.

서울특별시



수신자 서구1-25 의학과

주무관 김미연 보건의료정책과장 04/29 박유미

협조자 약무팀장 정지애

시행 보건의료정책과-13457 (2013.04.29.) 접수 의학과-9016 (2013.04.30.)

우 100-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/

전화 2133-7533 /전송 766-8834 / 대시민공개